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0년 10월호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투자업규정
- 나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나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나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
- 다.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신탁재산의 자전거래 요건 완화 등)

나.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)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0/9/23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요건,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,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보고의무를 완화하여 투자자의 편익을 제고하고, 신탁업자 및 펀드 판매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일부 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 마련(제4-80조의2)

- 기존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
-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

□ 신탁재산 자전거래 요건 완화(제4-90조)

-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중인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투자자(매도·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)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허용
 -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자전거래라 함

□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(제4-95조)

- 기존 규정에서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토록 하고 있어야 함
- 다만, 투자자 조회 편의, 신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탁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도 허용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(제7-54조)

-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현황을 판매를 대행하는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중보고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일원화

□ 조문상 오류 정정(제4-108조)

- 기존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투업자의 내부통제 기준 중 준용해야할 사항 규정하고 있으나, 일부 준용조문이 금투업규정에서 지배구조감독규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

나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2020/9/23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벤처·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액 한도가 없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(제2-2조의6)

- 온라인소액투자중개(크라우드펀딩)의 전문투자자 등에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를 추가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)
- 나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)
- 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0/9/22 개정 · 2020/9/28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수가 적은 종목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, 단기과열 종목 지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,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한 투자자 주의환기를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(제56조의4)
 -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
-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의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(제133조, 제133조의2, 제134조)
 -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(50% 초과)되는 종류주식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
 - 종류주식은 가격괴리율 요건에만 해당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
- 투자경고 · 투자위험종목과 단기과열종목의 중복 지정 방지(제133조의2)
 - 익일 투자경고 ·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산출하지 않도록 변경
- 투자위험고지 등(제110조)
 -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고지 대상 종목에 단기과열종목, 정리매매종목 추가
- 기타(제6조의3, 제41조의2 및 제56조의3)
 - 종류주식 가격이 해당 보통주식 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기세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1.5배 초과로 변경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다만, 제6조의3, 제110조, 제133조, 제133조의2,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

- 단일가매매 대상 종량주식종목에 대해 변동성 완화장치 적용 배제

나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0/9/21 개정 · 2020/12/7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- 우선주의 이상 급등락 방지를 위해 매매체결방법의 변경과 함께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변경 · 신설하고, 이상 급등 종목 등에 대한 투자자 주의환기를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(제28조의2, 제28조의3, 제28조의4)
 -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(50% 초과)되는 종량주식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신설
 - 종량주식은 가격괴리율 요건(50% 초과)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
- 상장주식수 부족(50만주 미만) 종량주식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(제28조의5, 제28조의8)
- 위탁주문의 처리에 있어 투자위험의 고지 등(제42조)
 -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고지 대상 종목에 단기과열종목, 정리매매 종목 추가(제42조)
- 기타 조문정비(제2조, 제28조의3, 제28조의5, 제28조의7)
 - 종량주식 가격이 해당 보통주식 가격을 1.5배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기세를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
 - 익일 투자경고 ·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산출하지 않도록 변경
 - 단일가매매대상 종량주식종목에 대해 변동성 완화장치 적용 배제
 - 단기과열지정 품절주 요건 대상(보통주) 및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(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포함) 명확화

2) 단 제28조의5, 제28조의7, 제2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

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0/9/3 개정 · 2020/9/7 시행)³⁾

1) 개정 이유

- 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업자간 주문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, 업자간 협업을 지원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업무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
- ETF선물을 추가 상장하여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의 거래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종목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
- 파생상품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식선물·옵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(제48조, 제114조~제116조, 제119조)
 - 회원은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한하여 다른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주문을 위탁받아 호가를 입력 가능
 - 고유재산운용업무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)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함
 - 호가 입력 시 위탁거래 및 자기거래의 구분에서 ‘타회원 위탁거래’(13번) 구분코드 및 위탁한 회원사의 ‘회원사 번호’를 함께 입력(별표 6 호가내용입력코드)
 - 타회원의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원사의 주문을 위탁받는 계좌에 관한 사항(개설, 변경 또는 폐쇄 등)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
 -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 전까지는 서면으로 5거래일 전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(신고양식 별지 제17호 참조), 이후 시스템을 통한 신고로 대체(부칙 제1조 참조)
 - 수탁회원은 호가 입력 시 신고 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,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문을 수탁거부 해야 할 의무가 있음
 - 회원은 수탁거부 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의무가 있음
 - 고유재산운용업무를 거래하던 자기거래 계좌와 타회원을 통해 거래하는 위탁계좌 간 미결제약정의 이관을 허용
- 신규 ETF선물 추가상장(별표 1의4 및 별표 6)
 - ETF시장의 위험관리 등 강화를 위한 ETF선물 추가상장

3) 다만, 제114조에 따라 회원이 그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신고 및 협의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전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

- 신규상장 대상 기초 ETF는 'KODEX Top5PlusTR ETF(삼성 KODEX Top5Plus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)'으로 하며, 투자자들이 현물 보유물량에 대한 해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하도록 설정
- 현행 ETF선물거래의 기초ETF : KODEX 삼성그룹 ETF, TIGER 헬스케어 ETF, ARIRANG 고배당주 ETF, TIGER 차이나CSI300 ETF

□ 주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다 수시변경 개선(제162조의2)

- 미결제약정 보유한다 수시변경 조치가 보통주식 총수 10분의 1 이상 변경된 경우 거래승수 조정 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
- 거래승수가 조정된 종목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여 표준승수가 적용되는 종목만 거래되는 시점에도 수시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폐쇄형펀드 자산 가중평균만기 규제를 도입 등)
- 나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(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ETF·ETN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납입)
- 다.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(제휴 광고시 제휴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차단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
1) 2020/9/1 개정 · 2020/9/15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ELS 판매 증권회사 홈페이지의 수익률·손실률 표시로 인한 투자자 오해 및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한 개선요구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
 - 일부 ELS 판매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수익률을 확정적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거나, 손실률을 미표시 혹은 작게 표시함으로써 투자자 오해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
 - 금융위원회 ‘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’(2020.7)
 -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에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자 오해 소지 제거 및 정보비대칭 완화 필요

나) 주요 내용

- 별지 서식 개정(별지 제4-1호)
 - 전자공시서비스 내 ‘파생결합증권 등 청약정보 비교 공시’
 - ‘조건 충족 시 수익률’로 용어 수정
 - ‘최대손실률’ 자료 추가

2) 2020/9/18 개정 · 2021/1/1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수혜자 부담원칙 및 비회원사의 회원사로의 전환유도를 통한 자율규제기능 강화를 위해 비회원사 등 대상 광고심사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에 의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) 주요 내용

- (기존) 광고심사 1건당 광고심사수수료를 정회원 면제, 준회원 5만원, 비회원사 또는 회비미납 회원사 10만원(영상 및 음향광고물 20만원) 부과
- (개정) (비회원사 또는 회비미납 회원사) 1건당 광고심사수수료를 10만원 → 15만원(영상 및 음향광고물 30만원)으로 인상(50% ↑)(제3조 제2항)

구분	기존	개정
인쇄광고물	1건당 10만원 (1건이 10장 초과 시 1장당 1만원 추가)	1건당 15만원 (1건이 10장 초과 시 1장당 1.5만원 추가)
게시물(현수막, 포스터등)	1개당 10만원	1건당 15만원
영상 및 음향광고물	1건당 20만원 (1건이 10분 초과 시 1분당 2만원 추가)	1건당 30만원 (1건이 10분 초과 시 1분당 3만원 추가)

3) 2020/9/23 개정 · 2020/9/30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정책당국 등의 단기금융시장 모니터링 수요에 따라 별지 제15호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에 MMF 세분류를 신설하여 반영하고, 기타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집합투자 관련 통계 및 공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- 집합투자기구 분류(별지 제15호)
 - 단기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 수요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11차 분류(투자대상자산 등)에 MMF의 세분류(국공채형, 일반형)를 추가
 - 국공채형 :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, CP, 단기사채를 편입하지 않은 MMF
 - 일반형 : 국공채형에 해당되지 않는 MMF
 - 9차 분류(특성분류 I)에서 일부 세제혜택의 일몰 등 제도 · 환경 변화로 향후 이용 가능성이 없는 세분류의 삭제 및 미반영 법령 개정사항 등을 설명자료에 반영하여 정비
- 집합투자 관련 공시 및 통계 제출 관련 서식 정비(별제 제6~13호, 제15호, 제18~20호, 제24호, 제25호, 제28호)
 - 별지 제8호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의 제11호 서식인 소규모펀드 공시와 관련하여 모범규준 상 협회 제출 근거가 없는 '이행계획 공시' 관련 서식을 삭제
 - 금융위원회,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

-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 및 보고서 코드 등을 현행화하고,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집합투자 관련 공시 및 통계 제출 서식을 정비

4) 2020/9/24 개정 · 2020/9/30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'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'(금융위원회, 2020.4.27.)에 따라 영업 및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폐쇄형펀드 자산 가중평균만기 규제를 도입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- 가중평균만기규제 적용 제외 대상 펀드 명확화(제60조)
 - 만기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인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주로 편입하고 있는 부동산 · 특별자산 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가중평균만기 규제적용대상 펀드에서 제외
 - 금융위원회 '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'(2020.4.27.) 및 영업 및 업무규정 개정(2020.8.18.) 내용
- 자산별로 만기일을 대체 가능한 특정일 규정(제60조 및 별지 제66호)
 - 일정 자산에 대해서는 가중평균만기 산정시 현금화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만기일 대신 적용할 수 있는 특정일을 정함

나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가 발표한 'ETF · ETN 시장 건전화 방안'(2020.5.18.)에 따라 레버리지 ETF · 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(전문투자자 제외)에 대한 기본예탁금 도입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
 -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(2020.7.22.)을 통하여 관련 내용 기반영(업무규정 제87조의2, 시행규칙 제111조의3 제1항 제2호)

2) 주요 내용

-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ETF · ETN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입하도록 조문 정비(제4조)

- 투자자 예탁총액이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기본예탁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삭제

다.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

1) 개정 이유

- 핀테크 업체 및 타 금융사업자와 연계·제휴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CMA 제휴상품 광고시 투자자 오인소지가 없도록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제휴 광고시 제휴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차단
 - 제휴상품 광고시 제휴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현 사용 금지
-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기개정 사항 등 반영
 - 발행어음형 CMA 추가, 협회규정 중 광고 관련 부문 개정 사항 반영 등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